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27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3
-----------------	---

1. 주민소환투표권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 등	3
--	---

2.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조정	8
-------------------------	---

3. 주민소환청구 허위 서명 금지 규정 신설 등	16
----------------------------------	----

4. 주민소환투표청구 제한기간 축소	20
---------------------------	----

5. 서명을 반대하는 활동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	23
--	----

6. 주민등록 등 전산자료 요청 근거 신설	30
-------------------------------	----

7.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조정	33
--------------------------	----

8. 벌칙규정 정비	39
------------------	----

(1)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	39
-----------------------------------	----

(2)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 인적사항 거짓신고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41
---	----

(3)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	43
---------------------------------------	----

(4)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 반영 등	45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1.
3. 회부연월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소환 투표 절차 및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율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 실제 주민투표 및 소환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지만, 주민소환투표권은 여전히 19세 이상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적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민소환제도 활성화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면서, 그 비율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 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을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함(안 제8조).

라.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등의 서명요청 활동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마.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거짓으로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주민소환투표권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권 부여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단서 신설>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u>18세 이상으로서 제4조제1항의</u> ----- ----- ----- ----- ----- <u>.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다.</u>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 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공직자를 그 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제도¹⁾로서 현행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²⁾.

우선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기준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연령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인정기준³⁾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로서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공

1) 홍정선, 「新지방자치법」, 박영사, 2022, p.191-192

2) 참고로, 주민은 교육감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환권을 가지며, 이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됨.

직자를 소환하는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기준을 선거권의 연령기준과 통일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재외국민의 주민소환투표권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올라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인정하여 투표권 인정기준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소환투표권의 인정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공직자를 그 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려는 주민소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외국인의 주민소환투표권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민과 달리

3) 참고로, 선거권의 연령기준은 2020. 1. 1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었음.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외국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당 제외규정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여 주민과 외국인 의 주민소환투표권 인정여부에 관한 형평성을 달성하고,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선거법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주민소환투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주민소환투표제도의 실효성·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은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기준을 주민소환투표권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임.

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
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
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
상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
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
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
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
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
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
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
의 1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
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
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
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
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성명·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을 말한다) 및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지방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 한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부의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illegible]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면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2007. 7.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이후 추진된 주민소환투표는 2023년 기준 총 138건으로, 그 가운데 서명부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청구를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투표 없이 종결된 것이 127건⁴⁾,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에서도 요건 미달로 개표를 하지 못한 것이 9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의 실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⁵⁾되기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으로 통일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구 주민의 7~9% 수준⁶⁾으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결과는

4) 사유별로 서명미달 75건, 원인해소 4건, 철회 41건, 쌍방합의 4건, 대상자 궐위가 3건임.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6) <개정안에 따른 실시청구 정족수 추정>

무조건 공개⁷⁾하도록 하여 주민소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실시청구 요건	시·도지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 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	
개표 여부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에만 개표		항시 개표 (제한 없음)

구분	제1회 (1995년)	제2회 (1998년)	제3회 (2002년)	제4회 (2006년)	제5회 (2010년)	제6회 (2014년)	제7회 (2018년)	제8회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국평균 투표율(A)	68.4	52.7	48.9	51.6	54.5	56.8	60.2	50.9
서명자수 비율(B)=(A*15/100)	10.3	7.9	7.3	7.7	8.2	8.52	9.03	7.63

자료: 행정안전부

7) 참고로, 주민투표의 경우 2022. 4. 26.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의 결과를 무조건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됨.

주민소환투표 실시청구 요건의 조정 및 개표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수단인 주민소환투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청구요건 완화에 따른 남용가능성⁸⁾, 주민소환투표 실시청구 요건과 동시지방선거 전국평균 투표율을 연동하는 것의 적정성, 투표결과를 공개할 경우 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환이 무산되더라도 불신임에 가까운 표를 얻게 되면 향후 소신있는 정책수행을 저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참고로, 미국의 경우 상당수 주에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직전선거의 투표율과 연계시키고 있음.

8) 참고로,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대상자는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부단체장 등이 권한을 대행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미국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 **(미국)** 상당수 주(State)에서 청구요건을 직전 선거의 투표율과 연계
 - 캘리포니아 주 : 소환 대상 직위에 대한 직전 선거 투표자 수의 12%
 - 일리노이 등 3개 주 : 소환 대상 직위에 대한 직전 선거 투표자 수의 15%
 - 미시간 등 9개 주 : 소환 대상 직위에 대한 직전 선거 투표자 수의 25%
 - 캔자스 주 : 소환 대상 직위에 대한 직전 선거 투표자 수의 40%
 - ※ 주 공무원(state official) 소환 청구 기준
- **(독일)** 군(Gemeinde) 인구 규모에 따라 청구요건 차등화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사례
 - 5만명 이하의 군 : 청구권자의 20%
 - 5만명 초과 10만명 이하의 군 : 청구권자의 17.5%
 - 10만명 초과인 군 : 청구권자의 15%
- **(일본)** 청구권자 수가 40만명, 80만명 이상인 경우 청구요건 특례 부여
 - 40만명 이하 : 청구권자 총 수 의 1/3
 - 40만명 초과 80만명 이하: $(40만 \times 1/3) + (40만명 초과인원수 \times 1/6)$
 - 80만명 초과 : $(40만 \times 1/3) + (40만명 초과인원수 \times 1/6) + (80만명 초과인원수 \times 1/8)$

※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같이 전국에 걸쳐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소환청구의 남발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 약화가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임.

3. 주민소환청구 허위 서명 금지 규정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서명하거나 하게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생략) ② ~ ⑤ (생략) <u><신설></u>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u>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① ----- ----- ----- -----

임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 ④ (생략)

<신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소환청구인서명부를-----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서명요청 활동등의 제한) ① ~ ④ (생략)

⑤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32조(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1. (생략)
<u><신설></u>	<u>1의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하</u>
	<u>제한 자</u>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령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허위서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하여금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서명일자를 적고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⁹⁾,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서명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9)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민소환은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¹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허위서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인의 성명·생년월일 등 정보를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¹¹⁾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처벌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서명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임.

10) “주민소환은 주민이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중에 주민의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제도이고, 이는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자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헌재 2009.3.26. 2007헌마843]

11)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참고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된 바 있음.

4. 주민소환투표청구 제한기간 축소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을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 ----- ----- ----- -----.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1. (현행과 같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u>1년</u> 미만일 때	2. ----- - <u>6개월</u> -----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3.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규정을 두어 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③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소환청구의 남용을 방지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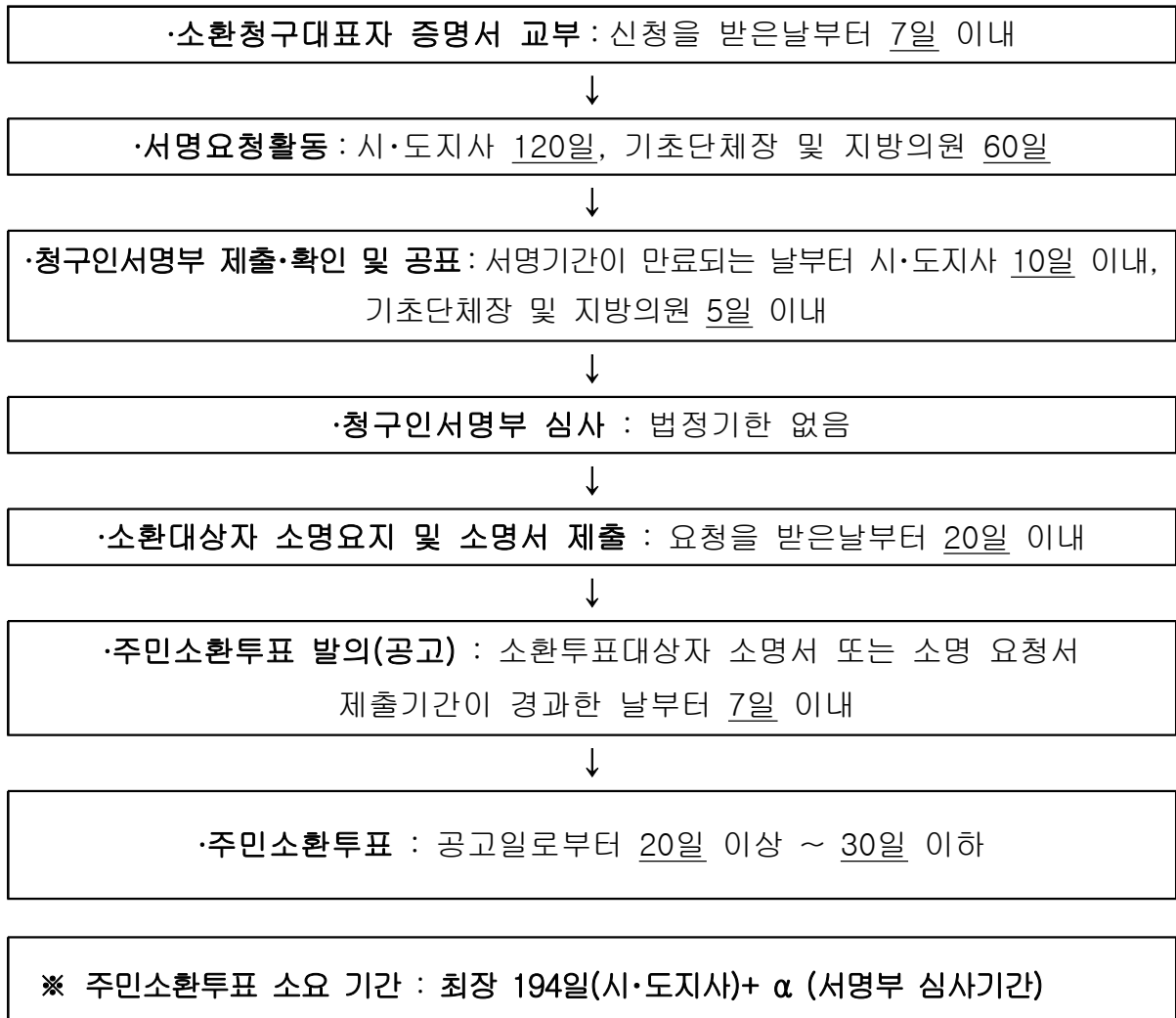
개정안은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구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대상자의 임기가 4년임을 고려할 때 1년의 제한기간은 다소 장기에 해당한다는 견해¹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청구제한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비리·위법 등 주민이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민소환 절차의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소환의 실익이 부족하다는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홍정선, 「新지방자치법」, 박영사, 2022, p.196.

14) 고문현,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지방자치법연구 제11호, 2006, p. 167.

<주민소환투표 절차 소요 기간 산정>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소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5. 서명을 반대하는 활동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공무원,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등이 서명을 반대하는 활동 및 해당 활동의 기획·주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안 제10조제2항),

②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하거나 서명을 반대하는 활동(이하 “서명요청활동등”이라 함)을 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③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안 제10조제4항) 한편,

④ 서명을 반대하는 활동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제3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라 한다)는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될 수 없으며, <u>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u> 관여할 수 없다. 1.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4호를 제외한다). 5.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② ----- ----- --- <u>서명을 요청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하 “서명요청활동등”이라 한다)</u>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등을----- --- <u>서명요청활동등에</u>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③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
청을 한 자

③ -----

----- 서명요청활동등을 할 -----

④ -----

---서명요청 활동등-----.

제30조(벌칙)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서명요청

활동등

제32조(벌칙) -----

-----.

1.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서명요청활동등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등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등에 관여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3.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10조제2항),

소환청구인대표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며(제10조제3항),

소환청구인대표자들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조제4항).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서명요청 활동뿐만 아니라 서명을 반대하는 활동 및 해당 활동을 기획·주도 하는 등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서명반대 활동 또한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 공무원¹⁵⁾ 등에 대해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현행	개정안
대상자	1.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2.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고등교육법 교원 제외) 3. 다른 법령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5. 입후보예정자, 입후보예정자의 가족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금지대상 행위	① 서명요청 활동 ②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관여 행위	① 서명요청 활동 ②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관여행위 ③ 서명반대 활동 ④ 서명반대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관여행위

또한, 개정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서명반대 활동에 대해서도 서명요청 활동과 동일한 제한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환청구인대표자들을 제외하고는 서명반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들의 경우에도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반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임¹⁶⁾.

15) 참고로, 「공직선거법」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다만, 소환청구인대표자들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자로서 이들이 서명

<서명요청활동등에 대한 가능 여부 비교>

		현행		개정안	
		소환청구인 대표자등	소환청구인 대표자등 외의 자	소환청구인 대표자등	소환청구인 대표자등 외의 자
서명 요청 활동	인쇄물 등 외의 방법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인쇄물 등 방법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 가능	불가능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 가능	불가능
서명 반대 활동	인쇄물 등 외의 방법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인쇄물 등 방법	가능	가능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 가능	불가능

※ 법문언상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의 서명반대 활동은 가능하나, 실제로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서명반대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서명반대 활동 및 서명반대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반대 활동에 관여를 금지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람 외의 대상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극적 반대활동의 경우에도 금지 및 제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¹⁷⁾ 등에 대한 논의가 필

반대활동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17)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대활동을 제외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법안문구를 “방해”로 조정한 바 있음(21대 국회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안심사제1소위).

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32조제1호는 벌칙의 대상을 ‘제10조를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에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서명요청활동등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등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등에 관여한 자’로 확대하고 있는데,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측면에서 서명요청활동등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등에 관여한 자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서명 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행위인 ‘서명 방해 활동’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주민등록 등 전산자료 요청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를 위해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외국인등록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주민등록 등 전산자료의 제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주민투표법」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⁸⁾, 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등은 무효로 인정됨. 개정안은 서명의 무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 심사를 하는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외국인등록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소환청구인서명부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¹⁹⁾.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요청의 명확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는 입장임

1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주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주민투표청구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주민투표안”은 “주민소환투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은 “제7조”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시·도지사”로, “자치구·시 또는 군”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으로, 같은 법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본다.

19) 참고로, 현재에도 소환청구인서명부 심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왔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7.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조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제19조 및 제20조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의 인용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69조·제79조·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 ----- ----- -----제59조(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제61조----- ----- -----제82조의4 및 제82조의7----- ----- ----- ----- ----- ----- ----- ----- ----- ----- ----- -----

황”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82조의6 삭제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되, 그 부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 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 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할 수 없다.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9조(신문광고)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주민소환투표
운동정보를-----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

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정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대답을 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6.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③ 지위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금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본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으로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69조(신문광고)·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82조의6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이 아닌 방법으로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 제19조와 제20조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개최 토론회를 제외하고, 인터넷광고를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²⁰⁾에 따라 삭제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를 준용대상조문에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시 투표운동 기간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

2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현행법과 개정안의 선거운동 방법 비교>

	현행	개정안
주민소환 투표운동의 방법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신문광고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개최 토론회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신문광고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인터넷광고
주민소환 투표운동의 기간	-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 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 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 다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및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일 등에도 가능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의 효과성, 공정성, 주민소환투표운동 기회의 보장 측면 및 선거운동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및 인터넷광고를 포함할지 여부와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한 위헌결정 등을 반영하고, 현행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 중복하여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임.

8. 벌칙규정 정비

(1)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조(벌칙) ----- ----- ---제85조제1항 및 제2항----- ----- ----- -----.
제31조(벌칙) 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① ----- -----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의----- ----- ----- -----.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선거관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개정(시행일 2014. 2. 13)에 맞추어 현행법의 벌칙규정을 조정하려는 취지임(안 제28조 및 제31조).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개정규정>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 '14.2.13 일부개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5년 이하의 징역</u>에 처한다. 2.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계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종전 제1항과 같음) ③ (종전 제2항과 같음) ④ (종전 제3항과 같음)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5년 이하의 징역</u>에 처한다.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을 한 사람	을 한 사람 ⑥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	--

개정안은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취지이나, 「공직선거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의 체계정당성 관점에서 형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 인적사항 거짓신고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하거나 주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허위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인	제30조(벌칙)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명부에 오르게 한 자 4.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u>서명요청 활동</u>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4. -----<u>서명요청 활동등</u>----- ----- ----- ----- ----- ----- 5. 거짓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①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거짓으로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 서명요청 활동의 정당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① (생략)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u>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u> 2. <u>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u>	제30조(벌칙) ① (생략) ② <u>제20조제1항에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는-----</u> -----. <삭제> <삭제>
제31조(벌칙) ① (생략) ② <u>제20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31조(벌칙) ① (생략) <삭제>

개정안은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안 제20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1조).

다만, 개정안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32조제3호는 ‘제20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행위가 개정안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3호의 범죄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30조제2항·제32조제3호 구성요건 및 형벌>

개정안 규정	구성요건	형벌
제30조제2항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외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제3호	제20조제2항 규정 ²¹⁾ 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정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6.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4)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 · 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 ·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 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 ~ 4.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u>사전투표사무원</u> ----- ----- ----- 2. ~ 4. (현행과 같음) ④ ----- ----- ----- <u>제261조제10항 및 제11항</u> -----.

개정안은 현행법 제27조 및 「주민투표법」 제19조²²⁾에 따라 준용되

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주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주민투표청구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주민투표안”은 “주민소환투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은 “제7조”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는 “시 · 도지사”로, “자치구 · 시 또는 군”은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 · 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으로, 같은 법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본다.

「주민투표법」

제19조(투표 · 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 · 개표구의 설치, 투표 · 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 ·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

는 「공직선거법」 제148조²³⁾의 개정에 따라 ‘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을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같은 법 제261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준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개정규정>

「공직선거법」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공직선거법」 (법률 제12267호, '14.1.17 일부개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관할구 · 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 일부터 2일간(이하 "不在者投票期間"이 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 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不在 者投票所"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 구 · 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 이라 한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소를 그 관할구역에 설치·운영하여야

을 준용한다.

23)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2. 13., 2018. 4. 6.>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공직선거법」 (법률 제12267호, '14.1.17 일부개정)
지에 설치·운영하되,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개정규정>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 '14.2.13 일부개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⑦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⑩ (종전 제7항과 같음)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 '14.2.13 일부개정)
⑧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	⑪ (종전의 제8항과 같음)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 '14.2.13 일부개정)
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34